

종합 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경북문화재단 종합감사 -

2022. 11. .

♠. 처분요구일람표

1.	제규정 정비 미흡	(통보)		1
2.	출장여비 운임 정산 부적정	(주의)		4
3.	◆◆◆◆◆ ○○○○○ 구축 용역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6
4.	2022 달리는 ○○○○ ■■■■ 임차 용역 계약대상자 선정 부적정	(주의)		9
5.	가족수당 및 복지포인트 지급 부적정	(시정)		12
6.	계약보증금 세입 조치 부적정 등	(시정)		15
7.	물품관리 및 정기재물조사 업무 추진 부적정	(시정)		18
8.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결과 공개 부적정	(주의)		21
9.	대행 및 수탁사업 수탁료 결정과정 미흡	(통보)		23
10.	행사·홍보비 예산 목적 외 사용	(주의)		25
11.	가족수당 수령 부적정	(시정)		27
12.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미사용	(시정)		29
13.	수의계약업무 추진 부적정	(주의)		31
14.	출장 미신청 및 여비 지급 부적정	(주의)		33

경 상 북 도

통 보

제 목 제규정 정비 미흡
소 관 청 경북문화재단
관 계 부 서 ○○○○
내 용

(재)경북문화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은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을 확대·개편하여 2020. 7. 11. 출범하였으며, 정원은 66명으로 사무처, 문화예술본부, 한복진흥원, 문화재연구원으로 조직을 구성·운영 중에 있다.

1. 유급휴일 운영 부적정

재단에서는 「복무규정」 제20조에 따라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급휴일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 유급휴가 외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휴가(경조사휴가, 출산휴가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해당하는 항목은 제외)를 운영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¹⁾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등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되어 있고(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 특정 근로일로 대체 가능)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1)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추석 연휴,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기독탄신일, 선거일 및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따라서 재단에서는 지침·법령에서 정하는 유급휴일 외에는 유급휴일을 운영하여서는 안된다.

그런데 재단에서는 「복무규정」 제20조에 법에서 정한 유급휴가 외에 재단 창립기념일(7월 11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여 2022년 전 직원 ☐☐명이 유급휴일을 부여받았다.

2. 직제규정 정비 미흡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그 범위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률 제27조와 「지방 출자·출연 기관 인사·조직 지침」(행정안전부) IV-가. 조직과 정원 운영 원칙에 따르면 조직과 정원에 관한 내부규정에는 조직별·직급별 정원을 명확하게 나타내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재단 「직제규정」 제4조에 따르면 재단의 직종별, 직급별 정원은 [표]와 같으며 부서별, 직종별 정원은 정원 총수의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다.

[표] 경북문화재단 직급별 정원 표

소 계	66명
별정직 1급	1
별정직 2급 또는 사무직 2급	4
별정직 3급 또는 사무직 3급	2
사무직 4급	7
사무직 5급	3
사무직 6급	9
사무직 7급	17
수석연구원	1
책임연구원	2
선임연구원	6
주임연구원	11
전임연구원	2
기능직 8급	1

따라서 재단은 엄격한 조직 관리를 위해 사무처, 문화예술본부, 한복진흥원, 문화재연구원 각 조직별, 직급별 정원을 명확히 구분하여 인사 업무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재단 창립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직급별 정원만 「직제규정」에 따라 정하고 부서별·직종별 정원은 마련하지 않는 등 조직 운영을 소홀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에서 제외하도록 「복무규정」 개정 등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서별·직급별 정원을 결정하고 조직운영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통 보)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출장여비 운임 정산 부적정
소 관 청 경북문화재단
관 계 부 서 회계관리과
내 용

(재)경북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출장명령에 따라 임·직원들의 업무수행에 사용한 출장경비를 관계규정에 의거 지급하고 있다.

재단 「여비규정」 제12조에 따르면 국내여행자는 여행을 완료한 후 운임과 숙박지의 세부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직원에게 출장여비 정산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정산 신청을 받은 회계 관계직원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여비의 정산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2에 따르면 정산 신청을 받은 회계 관계 공무원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여비를 정산하여야 하며,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 소재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정산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회계 관계직원은 여비 정산 신청내역과 출장자가 제출한 증거서류를 비교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정한 정산신청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자가용 운임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재단 ㉠㉠㉠㉠㉠의 '00. 0월~0월 사이 출장여비 지급 내역을 확인한 결과 직원 0명이 청구한 00건의 출장여비 정산서류 중 경북문화재단, 경북도청 및 경상북도인재개발원 등에 출장을 간 경우에 자가용 이용에 대한 증거서류가 없는 데도 운임을 지급하는 등 여비 정산신청에 대해 검토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앞으로는 출장여비 지급 시 정산서류 검토를 철저히 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의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 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 ○○○○○ 구축 용역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소 관 청 경북문화재단
관 계 부 서 ◆◆◆◆◆
내 용

(재)경북문화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 ○○○○○에서는 0000. 00. 00.
(주)□□□□□○□□□와 0000. 0. 00.까지 ◆◆◆◆◆ ○○○○○를 구축하는 것으로
용역금액 00,000천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재단 「재무회계 규정」 제71조에 따르면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계약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등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4장-
제2절-1에 따르면 과업내용서는 계약문서로서 계약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산출
내역서 등과 상호보완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예규 제14장-제7절-2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¹⁾로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기간 연장
신청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한 후 계약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계약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1) 용역기간 중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과업내용의 변경 등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과업내역서에 명시되어 있는 과업내용을 확인한 후 추가 과업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기간을 검토한 후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가 정해진 기일까지 정해진 과업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에게 지연배상금을 부과한 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그 결과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계약기간 0일이 부당하게 연장되었고, 계약상대자에게 부과되어야 하는 지연배상금 000천 원이 과소 부과 되었다.

조치할 사항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는

- ① 앞으로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계약연장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계약 연장하시기 바랍니다.(주 의)
- ② 재단 「징계 규칙」 제24조 및 「경상북도 자체감사 규칙」 제18조에 따라 관련자 ◇◇◇과 ■■■■은 ㉠㉠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2022 달리는 ◇◇◇◇ ◇●●● 임차 용역 계약상대자 선정 부적정
소 관 청 경북문화재단
관 계 부 서 ○○○○○○○○
내 용

(재)경북문화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에서는 2022 달리는 ◇◇◇◇ ◇●●● 공연용 이동 무대차량을 임차하기 위하여 나라장터에 입찰공고¹⁾ 후 2회에 걸쳐 (주)○○○○○의 단독응찰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재단 「재무회계 규정」 제71조에 따르면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계약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1. 입찰 참가자격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32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제1절-7에 따르면 특수한 기술·공법 등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무차별적으로 제한하는 사례는 금지하고 있다.

1) 0000.0.00., 0000.0.00.

따라서 재단에서는 차량임차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고,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하지 아니하는 특허 등으로는 입찰 참가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재단에서 나라장터에 공고한 입찰공고문에 따르면 입찰 참가자격을 자동차 대여사업이나 리스 업종으로 제한하지 아니하였고, 차량임차는 특허 등이 필요한 용역이 아닌데도 공연용 차량, 이동무대차량 특허 및 디자인 등록증, 무대 차량 제어 장치 운용 등 관련 특허증을 보유하거나 특허 사용권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부당하게 제한하였다.

그 결과 차량대여사업 및 리스업을 등록한 정당한 입찰참가자들의 해당 입찰 참가가 부당하게 제한되었고, 해당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차량대여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무대차량 제어 장치 및 방법에 대해 특허권¹⁾을 보유한 (주)○○○ ○○에 수의계약 혜택이 부여되었다.

2. 예정가격 기초금액 결정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제4절-3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²⁾을 작성하여야 하고, 예정가격은 거래실레가격, 원가계산, 견적가격 등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에서는 거래실레가격을 조사하거나 원가계산, 견적가격 등을 통해 예정가격의 기초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특허번호 00-00000000

2) 예정가격은 계약의 기초가 되는 기초금액 작성의 기준이 됨

- (예정가격 작성절차) ① 추정가격 작성 → ②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작성 → ③ 기초금액 작성 → ④ (복수예비 가격 작성) → ⑤ 예정가격조서 작성 → ⑥ 예정가격 결정

그런데 재단에서는 (주)○○○○○에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용역금액을 문의한 뒤 위 업체가 응답한 00,000천 원에 최저제한 견적율(87.745%)을 역산하여 산출한 00,000¹⁾천 원을 기초금액으로 결정하여 입찰공고 하였고, 해당 입찰이 0회 유찰된 후 0000. 0. 00. 위 업체와 00,000천 원을 계약금액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계약의 기초가 되는 예정가격 기초금액이 부적정하게 결정되어 계약 금액 산정의 신뢰성 및 계약 공정성이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는

- ① 앞으로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면허 등 소지자와 계약 체결하시고, 해당 계약을 수행하는데 필요하지 아니한 특허 등으로 부당하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 의)
- ② 원가계산, 비교견적, 거래실례가격 등을 통하여 예정가격의 기초금액을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주 의)
- ③ 재단 「징계 규칙」 제24조 및 「경상북도 자체감사 규칙」 제18조에 따라 관련자 □□□□은 ■■ 처분, ○○○○은 ●●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1) 00,000천원 ≍ 00,000천원×100÷87.745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가족수당 및 복지포인트 지급 부적정
소 관 청	경북문화재단
관 계 부 서	◆◆◆◆◆◆
내 용	

(재)경북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는 소속직원들에게 매월 급여에 가족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통해 복지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1.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재단 「보수 규정」 제1조 및 제23조에 따르면 「공무원 수당 등 지급규정」을 준용하여 임원 및 직원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7장-Ⅲ-1에 따르면 부양가족 요건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도록 되어 있고, 소속 기관의 장은 취학이나 요양 등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지급액은 배우자, 직계존비속¹⁾, 자녀로 구분²⁾되어 있다.

1) 직계존비속 가족수당 지급 대상 : (남자) 만 60세, (여자) 만 55세

2) 배우자 : 월 40,000원, 직계존·비속 : 1명당 월 20,000원, 자녀 월 20,000원 ~ 월 100,000원

그리고 가족수당을 지급받으려 하거나 부양가족 변동이 생긴 공무원은 부양가족(변동)신고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소속 공무원의 부양가족 변동사항 확인을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공무원의 주민등록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규채용·퇴직 등 공무원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 소속직원은 부양가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변동 신고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재단의 장은 부양가족 변동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으로부터 주민등록표를 제출받거나 행정정보 공공이용을 통해 확인하여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있는 직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감사기간 중 가족수당 지급 실태를 확인한 결과 세대분리의 사유로 부양가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계존속이 있는 직원 및 신규채용 직원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액을 잘못 계산하여 소속직원 0명에게 가족수당 0,000천 원을 부당 지급하였다.

2.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부적정

재단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조 및 제8조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복지점수를 직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재단에서 연도별로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에 따르면 복지 포인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기본점수, 근속점수, 가족점수로 구성¹⁾되어 있으며, 가족점수는 재단 「보수 규정」 제23조에서 정한 가족수당 지급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23조에서는 가족수당은 임원 및 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공무원 수당 등 지급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에서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소속직원 부양가족 변동사항을 조사하여 가족점수를 포함한 복지 포인트를 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감사기간 중 복지 포인트 배정실태를 확인한 결과 세대분리의 사유로 부양가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계존속이 있는 직원 0명에게 가족점수 000천 원을 부당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부당하게 지급된 가족수당 0,000,000원, 복지 포인트 000,000원은 지급받은 자로부터 회수하여 세입처리 하시기 바랍니다.(시 정)

1) △ 기본점수 : 900포인트, △ 근속점수 : 근속 1년당 10포인트, △ 가족점수 : 배우자 100포인트, 부모 및 자녀 1인당 50포인트 (* 1포인트 = 1,000원)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계약보증금 세입 조치 업무 처리 부적정 등
소 관 청 경북문화재단
관 계 부 서 ☒☒☒
내 용

(재)경북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는 ‘0000 경북문화재단 ●●●
●●방안 용역’을 아래 [표]와 같이 추진 중 계약상대자의 내부사정으로 인한
용역 중단 요청으로 계약 해지하였다.

[표] 용역 계약 해지 현황

용역명	계약금액 (천원)	용역기간	계약해지일	계약상대자	비고
0000 경북문화재단 ●●● ●●방안 용역	-	0000.00.00. ~ 0000.00.00.	0000.00.00.	주)○○○○○○○○ (○○○)	

1. 계약보증금 세입 조치 처리 업무 부적정

재단 「재무회계 규정」 제71조(준용)에 의하면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예산, 결산, 계약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및 동법 시행령,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경상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경상북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계약보증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계약보증금 면제)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고,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으나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계약보증금의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계약보증금)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절 계약이행의 보증 ‘4-가’에 의하면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재단에서는 ‘0000 경북문화재단 ○○○ ○○○방안 용역’ 계약 시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첨부하여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해당 용역을 추진하던 중 용역 추진이 부진하여 ‘경북문화재단 ○○○ ○○○방안 수정 및 보완 요청 (■■■■팀-000, 0000.0.00.)’ 공문을 통해 ①착수, 중간, 최종보고 진행 요청 ②전체적인 재구성 요청 ③과업지시서에 따른 용역 수행 ④자료취합 및 분석뿐만 아니라 결론으로 가는 논리적인 과정 추가 ⑤빠르고 신속한 과업 완료를 위해 소속 연구원 재단 파견 요청 등을 지시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재단 ○○○ ○○○ 용역 계약 지속 여부 의견 조회(■■■■팀-0000, 0000.0.0.)’를 통해 용역의 지속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였고 계약상대자는 ‘0000 경북문화재단 ○○○ ○○○방안 연구 중단(◆◆-000000000, 0000.0.00.)’ 공문을 통해 내부사정으로 용역 중단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재단에서는 0000.0.00. 계약해지 통보하였다.

그런데 재단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단 재무회계 규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선금 회수, 계약보증금 세입 조치를 하여야 하였으나, 지급한 선금 00,000천 원(이자 포함)만 회수하였고 계약보증금은 감사일 현재까지 세입 조치하지 않았다.

2. 용역 기성 대가 지급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3-라’에 의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해지한 경우와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4절 계약이행의 보증 ‘4-라’에 의하면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으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계약보증금 면제)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계약보증금 면제) 제1항제2호에 의하면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재단에서는 ‘0000 경북문화재단 ●●● ●●●방안 용역’ 계약 해지를 하면서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고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 의)
- ② 계약보증금,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 상계 처리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 정)
- ③ 재단 「징계 규칙」 제24조 및 「경상북도 자체감사 규칙」 제18조에 따라 관련자 □□□는 △△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물품관리 및 정기재물조사 업무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경북문화재단
관 계 부 서	●●●●
내 용	

(재)경북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는 물품관리 및 정기재물조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1. 물품수급관리계획 미수립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재단 「물품관리 규정」 제2조(적용범위)에 의하면 재단의 물품관리는 관계법령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7조(물품의 수급관리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물품 수급관리계획)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소관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맞추어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이하 ‘물품 수급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하고,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야 하며, 해당 연도에 취득·사용 또는 처분하려는 예정 수량 및 소요 예산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재단 「물품관리 규정」 제14조(물품수급관리 계획수립)에 의하면 대표 이사는 물품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물품의 취득과 사용 및 처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물품관리관으로 하여금 물품수급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에서는 효율적이고 적절한 물품 관리를 위해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단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물품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물품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등 물품수급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2. 물품 정수관리 소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에 의하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주요 물품의 정수와 사용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제1항에 의하면 주요 물품의 정수와 사용 기준을 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대상 물품의 선정, 정수의 책정 및 배정, 내용기간, 대체성 및 소모감모율 등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으며, 제3항에 의하면 정수관리대상 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에서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주요 물품의 정수와 사용기준을 정해야 하며, 정수관리 대상물품¹⁾은 정수 배정 후에 물품을 취득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단에서는 주요 물품의 정수와 사용기준을 정하지 않고, 감사일 현재 까지 컴퓨터 및 카메라 등 정수대상 물품을 구입하였으며, 정수가 배정되지 않아 물품을 취득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등 정수 물품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1)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소모품의 적정 보유 수량을 말하며, 조직의 정원, 기능,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정수책정이 필요함(2022년 지방자치단체 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

3. 정기재물조사 업무 소홀

재단 「물품관리 규정」 제37조(정기재물조사)에 의하면 재단의 모든 물품의 실제 수량과 장부상의 수량을 대조 확인하는 정기재물조사는 매년 6월 31일을 기준으로 대표이사가 작성 시달한 재단 재물조사 실시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고, 정기재물조사는 물품출납원 단위별로 실시하되 물품별로 구분 조사하며, 물품관리관이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재물조사결과 보고서를 매년 8월 31일까지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에서는 정기재물조사 실시계획 수립 시에는 재물조사 기간, 대상, 범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물품에 대해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단에서는 0000.0.0.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는

- 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 의)
- ② 관련 규정에 따라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물품 정수관리, 정기재물조사 등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시 정)
- ③ 재단 「징계 규칙」 제24조 및 「경상북도 자체감사 규칙」 제18조에 따라 관련자 ■■■는 ■■ 처분, ■■■■은 ▲▲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결과 공개 부적정

소 관 청 경북문화재단

관 계 부 서 ●●●●

내 용

(재)경북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는 ‘0000 ○○○ ○○○문화예술 행사 용역 등 00건’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 체결하였다.

재단 「재무회계 규정」 제71조(준용)에 의하면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예산, 결산, 계약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경상북도 예산 편성 및 집행지침」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 절차에 따라 제안서는 기술 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계약담당자는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해야 하며,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로 구성하며,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원회 개최 후 관련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 위원별 평가 결과’의 ‘평가위원 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재단에서는 ‘0000 ○○○ ㉠㉠문화예술행사 용역 등 00건’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 시행 시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제안서 평가에 대한 결과를 전자 조달시스템 또는 재단의 정보처리장치 등에 공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는

- 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 의)
- ② 재단 「징계 규칙」 제24조 및 「경상북도 자체감사 규칙」 제18조에 따라 관련자 ■■■는 ○○ 처분, ■■■■은 ▲▲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통 보

제 목 대행 및 수탁사업 수탁료 결정과정 미흡
소 관 청 경북문화재단
관 계 부 서 □□□□□□□□
내 용

(재)경북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에서는 경상북도 등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기관(기업, 기업재단)의 위탁·대행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22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행정안전부, 2021. 6)」 ‘Ⅱ 예산편성의 원칙’ 편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은 지자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수반되는 대행수수료 등 비용은 그 원인자에게 최대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재단 「용역사업 운영 규정」 제2조, 제4조, 제6조에 따르면 경상북도 등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기업, 기업재단 등)의 위탁·대행·공동 사업 등의 용역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용역사업 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수탁사업 타당성, 수탁여부, 수탁료 및 감면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수탁료’라 함은 수탁 및 대행사업 계약금의 30% 이내에서 정하며 수입금의 관리에 따라 관리 운영하고 수탁한 사업 중 재단의 주요한 목적사업 선상에 있는 수탁사업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탁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한 경북도의 ‘공공기관 위탁수수료 징수기준 통보’(경북도 예산담당관-7705호, 2020. 6. 21)에 따라 2021. 10. 19. 개정된 같은 규정의 [별표] ‘수탁료 조건표’에

따르면 1억 원 미만의 수탁사업비는 10% 이내, 1억 원 ~ 5억 원 미만은 8% 이내, 5억 원 ~ 10억 원 미만은 6% 이내, 10억 원 이상은 4% 이내의 수탁료 기준요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 □□□□□□에서는 지자체 등으로 부터 수탁 및 대행 사업에 대한 의뢰가 있을 경우, 용역사업 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사업의 타당성, 수탁여부, 수탁료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수탁 및 대행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특히, 재단 수입금으로 관리 운영되는 수탁수수료(대행수수료)를 원인자인 지자체에게 최대한 부담하도록 하는 등 수탁료 확보를 위해 노력했어야만 했다.

그런데도 재단 □□□□□□에서는 ‘0000 □□□□□□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은 1억 원 미만 사업으로 최대 10%의 수탁료를 받을 수 있고, ‘㉠㉠㉠㉠㉠㉠개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는 1억 원 ~ 5억 원 미만 사업으로 최대 8%의 수탁료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수탁료 조정 및 협의 등의 절차를 활용하지 않고 위탁기관 요청대로 수탁료를 각각 5%, 6.5%로 정해 사업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수탁사업에 대한 수탁료 확보 등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아 재단 □□□□□□의 수입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는

□□□□□□ 자체 실정에 맞게 수탁료 비율, 수탁료 결정과정, 합리적인 징수 방안 등을 포함한 내부지침 등을 수립하여 수탁사업을 적정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통 보)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행사·홍보비 예산 목적 외 사용
소 관 청 경북문화재단
관 계 부 서 ◇◇◇◇◇◇◇◇
내 용

(재)경북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에서는 관련법규 및 지침, 정관 및 내부 규정 등에 의거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다.

재단 「정관」 제18조에 따르면 재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2020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2019. 6. 28)」 ‘예산집행 10대 원칙’에 따르면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예산으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지침 ‘예산과목 및 과목해소’ 및 ‘주요 항목별 집행지침’ 편에 따르면 기부금 관련 세출 예산항목은 사업비용 중 기타영업외비용으로 편성하도록 되어있고, 행사홍보비는 사업비용 중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항목으로 편성하되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임차료, 강사료, 식비 등의 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 ◇◇◇◇◇◇◇에서는 기부금을 집행 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해 연도 세출예산안에 ‘세부)기타영업외비용’, ‘통계목)기부금’ 항목을 편성한 후 이사회회의 의결을 받아 세출예산으로 확정된 후 당해 목적에 맞게 집행 될 수 있도록 했어야만 했다.

그런데도 재단 ◇◇◇◇◇에서는 0000. 00. 00. 개최된 ‘0000년 제0차 이사회’ 및 0000. 0. 00. 개최된 ‘0000년 0차 이사회’ 에서 각각 0000년 본예산 및 0000년 0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항목에 ‘기타영업외 비용’ 의 통계목으로 ‘기부금’ 항목을 편성하지 아니 한 채 이사회 의결을 받아 기부금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상태였고,

0000. 0. 00. ▣▣군에서 개최된 행사의 경우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주관하는 행사와 무관한 ▣▣군 자체 기부금 전달 행사임에도 0000. 0. 0. 행사·홍보비 항목의 예산을 활용하여 사회공헌활동 명목으로 기부금 0,000천 원을 지출하여 0000. 0. 00. ▣▣군▣▣▣▣▣▣▣▣◎◎금과 ▣▣▣▣기금으로 각각 0,000천 원씩 전달 하였다.

그 결과 이사회 의결 등 정당한 절차 없이 세출예산이 목적 외의 용도로 집행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는

- 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 의)
- ② 재단 「징계 규칙」 제24조 및 「경상북도 자체감사 규칙」 제18조에 따라 관련자 ◆◆◆은 △△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가족수당 수령 부적정
소 관 청 경북문화재단
관 계 부 서 ■■■■■■
내 용

(재)경북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은 재단 「보수 규정」 등에 따라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보수 규정」 제23조에 의하면 임원 및 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공무원 수당 등 지급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제2항에 따르면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있고,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으로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¹⁾,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²⁾,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 한다³⁾)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10조 제6항에 따르면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다.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및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따라서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은 직계존속이 부양의무를 가진 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며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을 때 지급 대상이며, 부양가족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부양가족(변동) 신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가족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으로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 직원 1명은 장인 및 장모와 주소와 생계를 같이 하다가 0000. 0. 00.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하였는데도 부양가족(변동)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0000. 0월부터 0000. 0월까지 총 00개월간 0,000천 원의 가족수당을 부적정 하게 수령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는

- 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주 의)
- ② 부당하게 수령한 가족수당 0,000천 원을 환수하시기 바랍니다.(시 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미사용
소 관 청 경북문화재단
관 계 부 서 ■■■■■■
내 용

(재)경북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은 재단 「재무회계 규정」 등에 따라 차량용 유류를 구매하고 있다.

재단 「재무회계 규정」 제71조에 따르면 본 규정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예산, 결산, 계약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및 동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경상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경상북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에 따르면 본 지침에 별도로 규정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서는 기관의 차량용 유류를 구입할 경우 원칙적으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달청에서는 2012년 10월부터 공공기관 차량용 유류에 대하여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고 있고, 공동구매 제도를 통해 유류를 구매할 경우 2.88%의 현장할인¹⁾과 1.1%의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고, 포인트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연 1회 해당계좌로 포인트가 자동 환급조치 되는 사실을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 ■■■■■■에서는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여 공용차량에 대한 유류를 구입할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예산을 절감하여야 했다.

1) 2016.1.1.부터 2019.1.31.까지 5.74%, 2019.2.1.부터 2022.3.31.까지 3.99%, 2022.4.1.부터 현재까지 2.88%

그런데 재단 ■■■■■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신청·발급하지 않았고, 0000. 0월부터 0000. 0월 현재까지 공용차량에 대한 유류를 구매 하면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법인카드로만 구매 하여 사용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유류구매 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시 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수의계약업무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경북문화재단

관 계 부 서 ■■■■■■

내 용

(재)경북문화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 ■■■■■■에서는 ‘◇◇ ☆☆☆ ☆ ◎◎◎ 3D 스캔용역’ 외 0건의 용역을 관련법규 및 정관, 내부규정·규칙 등에 따라 추진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계약의 원칙) 및 재단 「재무회계 규정」 제58조(계약의 원칙)에 따르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계약의 내용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르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2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공사 및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추진이 가능하며,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용역의 경우는 지정정보 처리장치(g2b)를 통해 2인 이상으로 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며,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일정기간(3일 이상,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 ■■■■■에서는 0000. 0. 00.~0000. 0. 00. 까지 총 0건의 계약 추진 시 용역 품의 금액(부가세포함)이 22,000천원이 초과함에 따라 지정정보 처리장치(g2b)를 통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을 처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예산 부족의 사유로 업체로부터 받은 최초 견적금액으로 품의한 뒤 낙찰률을 적용하여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로 설정한 금액으로 계약상대자에게 견적을 재요청한 후 1인 수의계약을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다수의 업체에게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계약업무 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는

- ① 앞으로는 품의금액에 따른 계약방법을 적정하게 시행하여 다수의 업체에게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 의)

- ② 재단 「징계 규칙」 제24조 및 「경상북도 자체감사 규칙」 제18조에 따라 관련자 △△△은 ●●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출장 미신청 및 여비 지급 부적정
소 관 청 경북문화재단
관 계 부 서 ■■■■■■
내 용

(재)경북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에서는 관련법규 및 정관, 내부규정·규칙 등에 따라 복무 및 여비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재단 「복무규정」 제4조 및 제9조에 따르면 직원은 법령과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직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같은 규정 제31조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하고자 할 때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재단 「여비규정」 제12조(국내여비의 결재와 정산)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출장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정한 기간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정산을 신청하여야 하며, 정산신청을 받은 회계 관계 직원은 정산 신청내역과 출장자가 제출한 증거서류를 비교하여 정산신청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여비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여비의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재단 ■■■■■■ 직원은 0000.0.00.~0000.0.00. 0일간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 문화재 표본 및 시굴조사 업무로 출장 결재를 득하지 않고 출장을 이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출장 결과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그에 수반되는 출장여비를 지급 받았다.

또한 재단 ■■■■■에서는 출장비 지급 시 출장자에 대한 여비관련 서류를 확인 후 지출하여야 함에도 직원이 제출한 증빙서류(하이패스내역)만 확인 후 출장 신청 여부에 대한 검증 없이 출장자에게 출장여비를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는

- 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 의)
- ② 재단 「징계 규칙」 제24조 및 「경상북도 자체감사 규칙」 제18조에 따라 관련자 ●●●과 ◆◆◆은 △△ 처분하시기 바랍니다.